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9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현정ㆍ이언주ㆍ민병덕

정태호 · 이학영 · 임오경

박균택 · 조승래 · 황명선
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,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만 피소추자의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국군통수 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까닭으로 인해 소추의결서 수령을 회피 하거나, 송달되는 시간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군경의 동원 등의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.

이에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 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	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
과) ① (생 략)	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	②
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	
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	
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	
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	
없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대통령 탄핵소추의</u>
	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
	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
	<u>한다.</u>